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9.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4월 14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5년 4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4.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전문에서 미비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의 홈페이지 공개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개정(안 제5조)
-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현행 조례의 최종 개정일은 2017. 10. 19.로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의 폐지·개정된 사항이 미반영됨에 따라 해당 사항 반영 및 조례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는 “녹색제품”의 정의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의 정의가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도록 입법경제성을 제고함.
- 안 제3조(적용대상 기관)는 적용대상 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 조례를 인용하여 정비하였으며,
- 안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는 법에서 규정한 기간에 맞춰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개정함.
- 안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1항은 법의 개정(2011. 4. 5.)으로 구매실적의 “공표” 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표”를 삭제하였으며,
 - 제2항은 “공표방법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 “공표”를 삭제함에 따라 함께 삭제함.
- 안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는 관련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용어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용어가 규정된 조항을 인용함.
 - 참고로, 현행 조례 제1호 및 제3호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되었으며, 현행 제1호에 따른 정의와 개정안 제1호에 따른 정의는 같고, 현행 제3호에 따른 “저탄소 인증 제품”은 개정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에 포함되는 개념임. 즉, 제3호의 정의는 확대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 현행 조례는 2017. 10. 29.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개

정 및 폐지 등의 사항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전반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였으며, 용어 해석을 명확히 하였고, 입법경제성을 확보하는 등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9
------------	-----

발의연월일: 2025. 4. .

발 의 자: 유승용, 이성수, 정선희
이예찬 의원(4인)

1. 제안이유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전문에서 미비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의 홈페이지 공개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개정(안 제5조)

다.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9조)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제4조제1항 중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구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구 홈페이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계·공표하는”을 “집계하는”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	

<u>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u> <u>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u> <u>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기</u> <u>준에 적합한 상품</u> <u>다. 그 밖에 환경친화성을 가</u> <u>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u> <u>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u> <u>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u> <u>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u>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 산시설이 <u>영등포구</u> 안에 소재 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구 본청·보건소·동주민센</u> <u>터</u> 2. <u>구의회</u> 사무국 3. <u>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u> 4. (생 략)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u>구청장은 「녹</u>	2.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u>(이하 “구”라 한다)</u> ----- -----. 제3조(적용대상 기관) ----- ----- -----. 1.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u> <u>기구 설치 조례</u>」에 따른 구 <u>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u> 2.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u> -- ----- 3. 「<u>지방공기업법</u>」 제76조에 <u>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u> 4. (현행과 같음)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u>서울특별시 영</u>
---	---

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
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
다.

② (생략)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
지 구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
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
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5조제1항을 준용

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구 홈페이지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

--- 집계하는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u>한다.</u> ③ (생 략)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 제품 4. (생 략) ②·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 ----- -----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